

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

(중앙전파관리소)

① 감사실시 개요

- 감사기간 : 2011. 4. 18. ~ 4. 29. (10일간)
- 감사인원 : 감사담당 ○○○ 등 5명
- 주요 감사사항
 - 무선국 허가·검사, 주파수 이용환경조사, 전파이용환경 보호, 전파사용료·과태료 징수 등 주요 업무의 수행 적법성
 - 불법 기기·복제·감청설비 등 조사·단속업무 수행 적정성
 - 감시장비·방탐장비 원격화 등 주요 사업 및 관련 기술연구개발의 추진 타당성
 - 전파관리 시설·장비 도입 타당성 및 운용·유지보수 적정성
 - 조직·인사 운용 및 예산 편성·집행의 적정성 등

② 기관 현황

- 조 직 : 4과 1팀, 1센터, 12지방전파관리소, 10 사무소
- 정 원 : 1,050명(청원경찰 113명 포함)
- 주요사업
 - 무선국 허가·검사, 불법무선국 단속, 전파감시, 혼신조사
 - 불법 기기·복제·감청설비 및 불법스팸 등 조사·단속

3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

제 목	지 적 내 용	조치 구분
①시설장비유지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 비목별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일반수용비 용도로 집행 - 96건 69,421,230원 ('09.2~'11.2) 	기관 경고
②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법경찰관리 정원 및 예산관리 부적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소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법경찰관리 인원을 산출·관리하여야 하나, 전체 사법경찰관리 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·조정 없이 관리 ○ 사법경찰관리 수사활동비 지급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사활동비는 신규지명, 전보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하여야 하나, 월 중에 신분변동이 생긴 14명('09~'10)에 대해 수사활동비 부적정 지급 	주의 2명
③비영리 법인 관리·감독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·감독계획 수립('10.5)시 지도·감독대상은 10개 법인이었으나, 2개 법인만 실시 	주의 1명
④보직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를 위해 장기근무자(본소 5년, 지소 3년)는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하나, 5년이상 장기 근무자(8명)에 대한 전보 미실시 	기관 주의
⑤유지보수 용역대상 시설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지보수 용역대상 확인 미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0년 ○○○ 등 9개사업 121식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시 유지보수대상 장비, 정상동작 여부 및 예비장치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, 현장 실사하지 않음 	통보 (개선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관리시설 장애관리 미흡 - 전파관리시설 장애시 복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나,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고토록 하는 등 전파관리시설 장애관리를 소홀히 함 	
⑥세출예산 재배정 업무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출예산배정 계획 수립시 관서별 관서규모 장비수량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나,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규모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소 간 차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예산배정 근거 불투명 	통보 (개선)
⑦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결제시 주된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 기재 불이행 	통보 (개선)
⑧물품 수급 및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수급관리계획 부적정 -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('09년~10년) 후 21회에 걸쳐 계획을 변경하였으나, 변경사유와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변경 승인 ○ 리스물품 관리전환시 처리 부적정 - 전파업무용 전산장비 리스물품 96점을 '10.7월, 전파연구소로부터 관리전환 받는 과정에서 리스물품 일부가 없음을 보고받았으나,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없는 물품을 지소에 출급하는 등 소관 물품의 관리 소홀 	통보 (개선)
⑨전파감시시설 장애 보고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감시 시설의 장애로 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, 보고 누락('09~'10, 총 8건) 	통보 (개선)